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2월 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2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2월 14일

제1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통축산과장 유 영 식

나. 제안이유

- 학교급식 여건의 변화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다자녀를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에 유통관련 종사자·식생활 교육 전문가를 포함 시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녹색식생활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다자녀” 신설(안 제5조제3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종전 “13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유통관련 종사자”, “식생활교육 전문가”를 신설 (안 제8조제2항)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희 철

-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여건의 변화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를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 현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면지역 초·중학생은 100%, 동지역은 최저생계비 기준 160%의 자녀들에게 지원되고 있음.
- 금번 주요 조례개정 내용은 동지역의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제5조 3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를 추가하고, 제8조 2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유통관련 종사자”와 “식생활교육 전문가” 2개 분야를 신설하여, 종전 “13인”에서 “15인”으로 2명 추가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식생활개선과 건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이 기대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